

8월의 안테나



盧 永 翰

(대한양계협회편집국장)

축산업 그만두면
과거 소득세
감면받은것 추징
당할 수도

상환, 차본에의 전입 등에 사용하도록 되었으며 만일 이에 사용되지 않을 때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조세감면혜택과 큰 차이가 있다.

즉 지금 낼 세금을 82년도에 모아서 내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관계 법조문

조세감면 규제법

제16조(감면 및 공제세액의 사용 및 제한처분) ① 제4조의2(증자소득공제) 제1항 또는 제4조의8 제1항 제1호 및(중요 산업에 대한 조세특례, 축산업도 이 조항에 의거 감면받음)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이나 공제(소득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자는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에 있어서 그 감면 또는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서 적립하고 그 기업합리화 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

축산업자 중에는 정부에서 축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소득세 등을 조세감면 규제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여 주는 입법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 업계에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사이에 우리와 깊은 관계가 있는 여러 법조문이 지난 임시국회에서 개정되었기에 소개한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감면받은 세액은 기업주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여 축산업에 재투자, 차입금상환, 이월결손금의

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改正 78. 3. 25)

1. 상환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社債, 외화차입금 또는 은행차입금의 상환.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주된 기계(이에 부수되는 기계를 포함한다) 및 構築物 또는 공장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축산업의 경우에는 축산업에 대한 재투자를 포함한다). (改正 76. 12. 22)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 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날로부터 동항 제1호의 상환에 있어서는 2년내에, 동항 제2호의 투자에 있어서는 5년내에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74. 12. 19)

③ 기업합리화 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新設 74. 12. 19)

1. 이월 결손금의 補填
2. 차본에의 전입



제17조(감면 및 공제세액의 추징) ① 제4조의2(※ 중요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제1항 또는 제4조의8제1항(축산감면)제1호및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이나 공제를 받은 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감면 또는 공제받은 사업년도의 과세표준 신고일로부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그감면 또는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액. 이하 같다) 100원에 대하여 日邊10錢으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지체 없이 추징한다. 이 경우에 추징할 세액은 추징가산액을 제외하고 감면 또는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 (改正 78. 3. 25)

1. 감면 또는 공제받은 세액을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부 사용하기 전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법인이 해산(합병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때(개정 78. 3. 25)

2. 감면 또는 '공제받은 세액'을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改正 78. 3. 25)

3.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때(신설 78. 3.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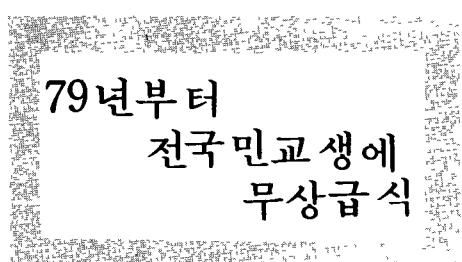
4. 제4조의8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자가 세금공제의 완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현물출자, 합병과 승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또는 처분하지 아니한 부분에 동항 제3호의 경우에는 그5년이 경과되기 전에 양도 또는 교환한 부분에 한한다(신설 74. 12. 19)

③ 제5조제2항 제23호, 제9조 제13항, 제10조제2항 제24호(직업훈련용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 및 제11조 제3항의(실업대학에 사용되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자재(국내생산불가능)에 대한 특별소비세면제)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자가 면제를 받은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면제 대상인 시설 및 기자재를 다른 목적에 공한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추징한다. (改正 76. 12. 22)

④ 정부는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8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5조 제2항 제23호, 제9조 제13항, 제10조 제2항 제24호와 제11조 제3항의 적용을 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사유의 발생 여부를 년1회 이상 조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改正 78. 3. 25)

제18조(적용시한) 이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은 이법에 따라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1년 12월 31일 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 期分 및 사업年分 또는 그기간중에 재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引取하거나 기타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分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설 76. 12. 22) ※ 과거 소득세법에 의한 감면과는 관계가 없다.



최근 일간지에 보도된 것을 보면 정부는

79년부터 전 국민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급식 법(案)을 마련 여당측과 협의를 마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하였다고 한다.

문화부가 성안하여 지난 18일 여당권에 넘긴 이 법안은 학교급식 대상자를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소요재원을 매년 정부 예산에



책정토록 하고 있다.

학교급식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성장기에 있는 학생에 영양식을 급여하는 것으로 선진 외국에서는 큰 효과를 보고 있으며 이웃 일본의 경우 학교급식 후 급격한 체력의 증가로 애소인의 대명사란 불명예를 벗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학교에 우유 및 빵을 급여하였으나 빵의 경우 변질되어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켜 중단 되기도 하여 학교급식 하면 변질된 빵으로 인한 식중독과 남는 우유의 소비등으로 잘 못 인식되고 있다.

이번 학교급식법도 국민보전을 위해 불가피 한것일 진대 보사부나 농수산부에서 더욱 깊게 참여 되어야 했지않나 생각되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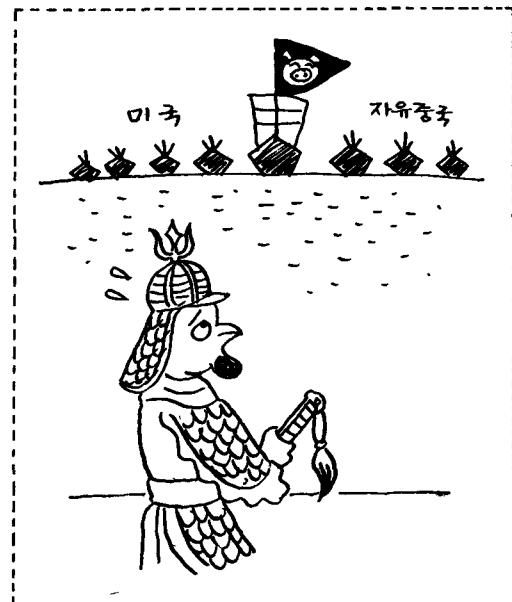
GNP 1000 \$의 국민으로서 모두 이번 정부의 용단을 크게 환영하며 우리 양계업자는 이번 기회에 과거와 같이 학교 급식은식빵이나 우유로 생각하는 문교부 당국자들에게 가장 값싼 단백식품이 계란과 닭고기라는 것을 인식시켜 국민보전에 이바지 할 기회를 만들 책임이 있겠다.

협회에서도 이번 미국사료곡물협회(지부장 박영인)의 후원으로 원색 닭고기 요리책자를 만들에 있어 학교급식과 단체급식에 역점을 두어 만든 것도 앞으로 닭고기 소비증의 저변 확대와 부족한 쇠고기, 돼지고기의 대체로 외화절약은 물론 값싸게 육류는 공급, 국민 체위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학교급식을 계기로 닭고기 계란의 재인식을 위한 범국민계몽을 벌려야 하겠다.

닭고기 및 계란은 모든 물가의 상승에도 값이 오르지 않고 거의 완전식품에 가깝다는 소비 선전이 7월에 들어 미국과 일본에서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세계는 바야흐로 쇠고기 돼지고기의 시대는 가고 닭고기 계란의 시대가 서서히 닥아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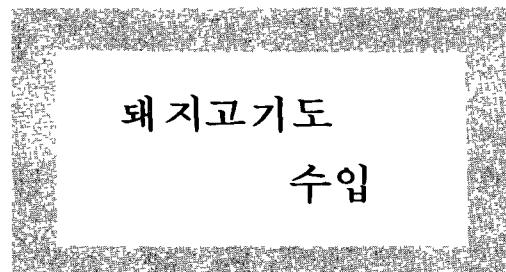
던 돼지고기도 이제는 수입해서 먹게 되었다.

정부는 비수기에 접어들었는데도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돼지고기 공급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 자유 중국으로 부터 돼지고기 1천 3백t을 진급구매, 이달 25일 경 도착시킬 예정이다.

계속하여 8월에 3천톤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돼지고기 값을 안정 시킬 계획인 것으로 발표되고 금년 들어 축산을 수요는 전년대비 당초 25.4% 가증가될 것으로, 예상 하였으나 40% 이상 증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족분 대부분을 수입 쇠고기 4만여t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돼지고기의 경우 당초 수요 예상량 보다 50% 이상 증가 하므로서 축산물 중 유일한 국제 경쟁력이 있는 돼지고기도 수입하게 되었다.

이번 돼지고기 수입이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는 것은 쇠고기 때와는 달리 국내 가격보다 수입가격이 비싸도 값이 오르면 수입 한다는 경제부처의 사고 방식이다.



작년 10월 까지만 해도 일본으로 수출되

최근의 신문보도는 쇠고기 돼지고기 수입에 대한 기사는 물론 주요 농산물의 무제한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부당국의 정책 방향보도로 양축가는 물론 전체 농민의 사기를 많이 떨어뜨리고 있다. 본지는 (5월호(36p)에서 농산물의 수급은 안보차원에서 신중히 다루어 주기를 바랐었다. 농산물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양계산물의 가격도 계절별로 진폭이 커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높은 때가 있는가 하면 생산비 이하로 가격이 떨어질 때도 있다. 정부의 가격 정책 때문에 '값이 오르면 국내 가격보다 비싸도 수입한다는 정책이면 계란, 닭고기 값이 일시적으로 값이 오를 때 수입하게 될 경우 지금까지 쌓아온 린 양계생산기반을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고 계속 수입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는 과거 미국의 잉여농산물이 수입될 때 충분한 경험을 한바 있다.

우리의 육류소비구조가 지나치게 쇠고기에 편중 되었음은 수차 지적되었고 값싼 닭고기로 육류소비를 대체하는 정책으로 바꾸지 않는 한 이번처럼 쇠고기 보다도 비싼 돼지고기를 계속 수입하여 이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번 대만에서 도입되는 돼지고기는 t당 C&F 3천 2백 달러(정육기준)이며 미국산은 t당 2천 10만 달러(지육기준)로 알려지고 있으며 대만산은 조작비를 합할 경우 국내 경락가격 지육kg당 1천 4백 원보다도 비싸게 되나 시장 판매는 행정지도 가격인 600gr(1근) 1천 2백 원 보다 50원 낮은 1천 1백 50원 선에 판매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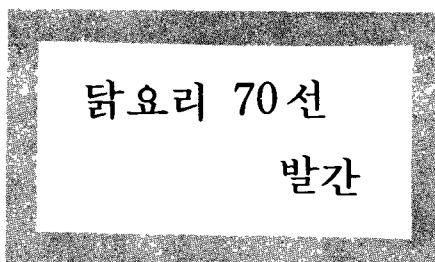
결론 차액은 쇠고기수입 잉여금에서 충당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결국 대만 양돈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결과로 될것이며, 이런 모순을 시정하기 위

하여는 당초 축산진흥기금 설립목적대로 국내 업자에 더 많은 생산기반에 필요한 보조금이 지급되어져야 할 것이다.

금년도 쇠고기 수입을 4만t 돼지고기 4천t 외에도 양고기 등이 수입되는데 비해 오직 닭고기 만이라도 수요량을 충족하고도 남는 것은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닭고기는 금년 들어 5월 말 까지 26,583kg을 수출하여 약 5만\$의 외화를 획득하고 있어 생산비만 보장되면 부족되는 대체육으로서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양계산업은 소비 확대로 발전의 가능성은 크며 생산조절 만이 발전의 길이라는 관념은 현재와 같이 육류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때에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말인 것 같다.



협회는 예산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번 "닭요리 70選"을 발간하였다. 이 책은 미국 사료 곡물협회의 지원을 받아 국판으로 선명한 인쇄에 먹음직스런 닭요리가 70가지나 수록 되었는데 내용은

- ① 일반 가정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것.
 - ② 손님 접대용
 - ③ 요식업 소용
 - ④ 단체급식용 등으로 되어 있다.
- 특히 앞으로 학교급식이 제도화 될 경



우를 생각해서 닭요리를 제 2 세 국민에게 어려서부터 급식기로 므로서 자라서도 닭고기를 즐기도록 하고 닭고기는 지방이 적고 양질의 단백질이 많아 미용식으로 가장 좋으며 특히 비만증이나 고혈압등 성인병에 편안할 만하다.

이번 원색 닭요리 70선의 원고는 사단법인 한국식생활 개선협회 왕준연 회장이 수고하였고 왕준연 회장은 이 닭요리 책자를 위하여 일본 미국에 직접 출장하여 그곳의 단체급식등 닭요리에 대한 연구를 하고 왔다.

최근 국민소득의 증가로 육류소비가 급증하여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을 수입에 의존하는 때에 값싼 닭고기를 이용할 수 있는 책이 발간된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지금까지 닭고기가 요리방법이 다양하지 못해 값은 싸면서도 대체육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여 온 취약점을 보완시 키리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원색 닭고기 70선의 발간이 우리나라

양계산업 발전사의 전기를 이룰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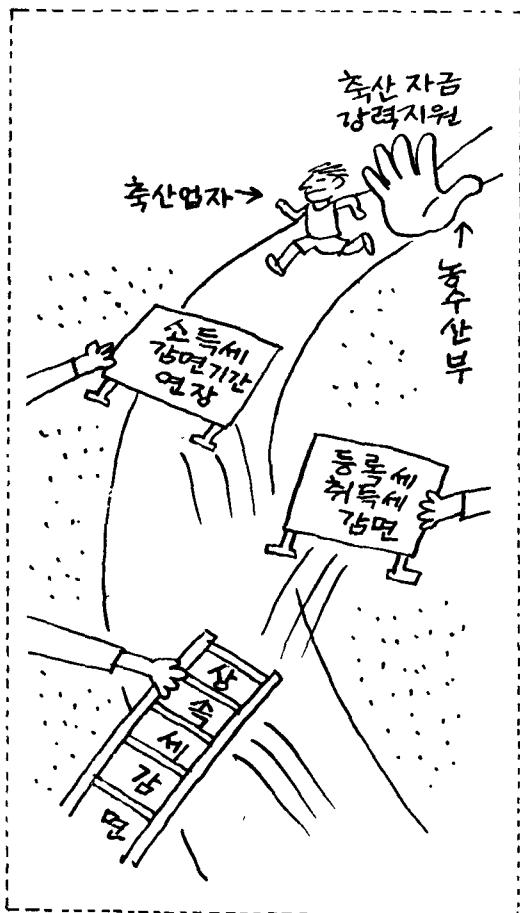
축산업 상속세 감면 고려

장덕진 농수산부장관은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계획을 마련, 지금까지 주곡위주의 수입원을 축산과수등 수요시장율이 높은 특작물등 위주로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히고 이를 과감히 수행하고 축산인들의 축산 의욕을 뒷바침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1. 축산자금의 강력한 지원
 2. 소득세 감면 기간의 연장
 3. 등록세 취득세의 감면
 4. 상속세의 감면 등을 고려하고 있다
- 고 밝혔다.

축산인들은 75년말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간이 발표될 때 감면기간을 몇년 더 연장하여 줄것을 관계 요로에 진정 견의하였고 만일 과세 될 경우 현제 반여전으로 의욕을 잃어 축산업의 규모를 축소 또는 폐업하여 축산물 수급에 큰 차질을 초래할 것을 예견하였다.

그후 불과 2년만에 소고기 4만t 돼지고기 4천톤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번 장덕진 장관의 발표는 꺼져가는 등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큰 활력소이며 특히 현재 산림사업에서와 같이 축산업도 상속세 감면을 고려한 것은 우리 축산인도 감히 생각하지 못하던 것으로 대가축과 같이 자본 회임 기간이 길고 특히 육종사업 같은 것은 대를 이어자



적 내량 생산을 위해서는 두드리면 문은 열릴 것이고 열릴 때 까지 두드려야 될 것이다.

다음은 발표 전문이다.

농수산부는 매년 반복 되는 가뭄으로 수리 불안전답의 영농이 타격을 입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업용수시설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밭으로 과감하게 전환하여 수입성을 보장토록 하며 특히 쌀·보리 등 식량작물 위주 의 농가소득 증대는 한계점에 다달은 것으로 보고 축산과수, 임업등 특산물 증산시설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서 농가소득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7일 농수산부 당국은 77년도 호당 농가소득은 1백 43만 2천 8백원을 오는 81년에는 73%가 더 많은 2백 45만원으로 개정하고 이를 위해 79년부터 81년까지의 3차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 사업계획을 마련 주곡 이외 축산물, 과수등 수요 신장율이 높은 특작물을 권장해서 농가 수익을 증대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산지개발을 과감히 전개하여 축산을 진흥시키고 현재 과수 1백 4곳, 채소 93곳, 임업 1백 7곳도 오는 81년까지 배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덕진 농수산부장관은 이처럼 특작물의 적극 추진은 물론 축산인들의 축산의욕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축산자금도 강력히 지원하고 축산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소득세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동록세와 취득세는 물론 조림사업처럼 후손에도 물려줄 수 있도록 상속세의 감면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낙농회보에서)

손대에서나 결실을 맺을 수 있어 감히 업계에서는 손을 대지도 못하였는데 이번 장덕진 장관께서 이런 점까지 깊이 통찰하여 주신 것에 축산인은 오직 감탄할 뿐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담당 경제부처(기획원, 재무부)는 물론 국회의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 막중한 업무를 농수산부 당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양축인도 적극 협조, 관계관을 이해 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양계업의 경우 소득표준율이 오히려 77년의 경우 0.5% 상향 조정되는 현실에서 제 조세감면의 필요성을 납득 시키는 길은 멀고도 협할지 모르나 축산물의 홍기